

정 관

제정 2005.05.07
개정 2011.03.17
개정 2013.03.22
개정 2015.03.23
개정 2017.03.24
개정 2018.03.28
개정 2019.03.27
개정 2021.03.29
개정 2022.03.31
개정 2023.03.30
개정 2024.03.28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개정 2015. 3. 23.)

이 회사는 “주식회사 이노션”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INNOCEAN WORLDWIDE INC.” (약호 “INNOCEAN WORLDWIDE”)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광고대행업
2. 광고물 제작업
3. 인쇄 및 출판업
4. 전시 및 행사 대행업
5. 국제회의 용역업
6. 전시물 제작 및 설치업
7. 건설업
8. 조사 및 정보관련 서비스업
9.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10. 사업 및 경영상담업
11. 영상 음반제작 , 음반과 비디오물 기획 및 판매업
12. 라디오, TV 프로그램 제작업
13. 연극, 영화, 음악 및 기타 예술관련 사업
14. 오락 및 운동관련 사업

15. 수출입업
16. 부동산 임대, 공급 및 관련서비스업
17.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 (개정 2017. 3. 24.) (개정 2022. 3. 31.)
18. 차량정보 사업 등 각종부가통신과 별정통신 사업 및 관련기기 판매·임대 사업
(신설 2011.3.17)
19. 무형재산권 임대 및 중개업 (신설 2017. 3. 24)
20. 사업지원 서비스업 (신설 2017. 3. 24.)
21.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신설 2018. 3. 28)
22. 모빌리티 관련 인프라·서비스 기획 및 운영 (개정 2022. 3. 31.)
23.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및 투자 (신설 2022. 3. 31.)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개정 2015. 3. 23.)

이 회사의 공고는 필요한 때,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nnocean.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개정 2015. 3. 23.)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개정 2015. 3. 23.)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600,000주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개정 2019. 3. 27.)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주주총회 모든 결의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③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삭제한다)

제8조의 2(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신설 2015. 3. 23.)

-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의 수는 10,000,000주의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로 한다.
- ②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 ③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제2항에 의한 우선적 배당에 추가하여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시 배당전부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제8조의3(전환주식의 수와 내용) (신설 2015. 3. 23.)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주주가 인수한 주식을 주주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이하 “전환주식”이라 함)을 10,000,000주의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발행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주주의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 1. 회사의 재무성과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2. 회사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
 - 3. 기타 이사회에서 전환을 결의한 경우
- ③ 전환으로 인하여 회사가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 전의 주식의 총발행가액을 신주식의 총발행가액으로 한다.
- ④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 전환비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사유, 전환비율을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 등 조정조건은 주식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전환주식의 주주 또는 회사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⑥ (삭제 2021. 3. 29.)

제8조의4(상환주식의 수와 내용) (신설 2015. 3. 23.)

- ① 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주주가 인수한 주식을 주주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주식(이하 “상환주식”이라 함)을 10,000,000주의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발행할 수 있다.
-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하는 주식의 경우 상환청구기간을 포함, 이하 동일함)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④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 때 회사는 상환할 뜻, 상환대상 주식 및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단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⑤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당해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 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현존 이익으로 상환대상 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 상환할 수 있고, 이 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⑥ 회사는 주식의 상환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⑦ 상환조건 및 기타 상환주식의 내용은 주식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8조의5(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신설 2019. 3. 27.)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신설 2015. 3. 23.)

① 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9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신설 2015. 3. 23.)

- ① 이 회사는 임. 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일시에 재직하는 임직원 전원에게 부여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⑧ (삭제 2021. 3. 29.)
- 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동등배당) (개정 2015. 3. 23.)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개정 2021. 3. 29.)

제11조(명의개서대리인) (개정 2019. 3. 27.) (개정 2024. 3. 28.)

-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삭제 2024. 3. 28)
-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 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 ④ 제 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3. 29.)

제12조(주주명부 작성·비치)

-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 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3. 29.)

제13조(기준일)

- ①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②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0.)

제13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신설 2019. 3. 27.)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 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 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 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3. 29.)

제3장 사채

제14조(사채의 발행) (신설 2015. 3. 23.)

-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신설 2015. 3. 23.)

-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개정 2021. 3. 29.)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신설 2015. 3. 23.)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삭제 2021. 3. 29.)

제16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개정 2019. 3. 27.)

제 11 조, 제 12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17조(소집시기)

-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8조(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3. 23.)

제19조 (소집통지 및 공고) (개정 2015. 3. 23.)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 3. 23.)

제22조(의장의 질서유지권) (신설 2015. 3. 23.)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4조(의결권 불통일행사) (신설 2015. 3. 23.)

-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개정 2015. 3. 23.)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7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와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와 이사회

제28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8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3. 24.)

제29조(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3. 23.)

제30조(이사의 임기) (개정 2015. 3. 23.)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다만, 주주총회 결의로 이보다 단기로 할 수 있다.

제31조(이사의 보선) (개정 2015. 3. 23.)

-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 28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 28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대표이사) (개정 2015. 3. 23.)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 1명 이상을 선임하며,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제33조(대표이사의 직무) (개정 2015. 3. 23.)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이 없는 경우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3. 23.)

제34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3.)
- ③ 권한의 위임,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사회규정을 둘 수 있다. (신설 2015. 3. 23.)

제34조의2(이사회 의장) (신설 2015. 3. 23.)

- ①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의장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의장직무를 대행할 임시의장을 지명하며, 의장 지명이 없을 경우에는 제33조에서 정한 순으로 이사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의3(의안) (신설 2015. 3. 23.)

이사회 의안은 의장이 제안한다. 단, 기타 이사가 제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4(경영진) (신설 2015. 3. 23.)

- ① 회사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둔다.
- ② 경영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이사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 (개정 2015. 3. 23.)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6조(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3.)

제37조(이사회내 위원회) (신설 2015. 3. 23.)

- ①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 및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설치하며, 추가로 회사 경영전략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윤리위원회 등)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0.)
- ②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이사회 내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그 조직 및 운영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
- ④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38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개정 2015. 3. 23.) (개정 2024. 3. 28.)

- ① 이사의 보수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지급한도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임원 퇴임 위로금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4. 3. 28.)

제39조 (이사의 책임) (신설 2015. 3. 23.)

- ① 이사는 임무해태 등의 경우에 상법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사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전항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법률상 이사의 책임감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 ④ 이사가 본 회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담하거나 지출한 모든 소송비용, 기타의 손실, 손해 및 채무는 회사가 이를 보상한다. 단, 그러한 손실, 손해 및 채무가 당해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위배로 발생하거나, 그 밖에 회사에 의한 보상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고문 등) (신설 2015. 3. 23.)

- ① 대표이사는 필요에 따라 고문 및 자문역 등을 위촉할 수 있다.

-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경영진에 준하여 이들의 보수와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감사위원회

제41조(감사위원회의 구성) (신설 2015. 3. 23.)

-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9.)
-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9.)
-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신설 2021. 3. 29.)
-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신설 2021. 3. 29.)
-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42조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개정 2019. 3. 27.)

-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43조(감사록) (신설 2015. 3. 23.)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7장 계산

제44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5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3.)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그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는 위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3.)
 -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3.)
-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3.)

제46조(외부감사인의 선임) (개정 2019. 3. 27.)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47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8조(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5조 제2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신설 2015. 3. 23.)
- ②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재산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3.)
- ③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2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0.)

제48조의2(분기배당) (신설 2015. 3. 23.)

- ①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7. 당해 사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④ (삭제 2021. 3. 29.)

제49조(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신설 2015. 3. 23.)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부칙

제1조(준용규정) (신설 2015. 3. 23.)

본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상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한다.

제2조(내 규) (신설 2015. 3. 23.)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서 업무상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조(시행일 및 적용례) (신설 2015. 3. 23.)

1. 이 정관은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 정관 제9조의2 중 상장법인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규정, 제19조 제2항은 본 회사가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신규 상장한 때로부터 시행한다.

2. 2015년 3월 23일 이 정관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본 정관 제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제3자에 대한 신주의 발행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신주의 발행은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발행 한도의 산정 시 포함되지 아니한다.

3. 2015년 3월 23일 이 정관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본 정관 제1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은 제14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발행 한도의 산정 시 포함되지 아니한다.

4. 2015년 3월 23일 이 정관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본 정관 제15조 제1항 1 호에 해당하는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은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발행 한도의 산정 시 포함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개정 2019. 3. 27.)

본 개정 정관은 제14기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8조의5, 제11조, 제12조, 제13조2, 제16조의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3. 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제16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또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3. 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제1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또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제18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또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3. 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제19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또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